

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2026年



진정한 효(孝)의 가치(價値)를 실현하는

송파한사랑복지용구제공사업소

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① 계약기간은 수급자(갑), 보호자(병)과 센터(을) 측 협의에 의해 정한 날짜를 계약시작일로 하며 계약종결일을 별도 협의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을 계약종결일로 정한다.

② 판매 계약의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급여범위) 복지용구 급여는 대여제품과 판매제품으로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대여제품

- 가. 수동 휠체어
- 나. 전동침대
- 다. 수동침대
- 라. 욕창예방매트리스
- 마. 이동욕조
- 바. 목욕리프트
- 사. 배회 감지기
- 아. 경사로

판매제품

- 가. 이동변기
- 나. 목욕의자
- 다. 보행차(성인용보행기)

- 라. 보행보조차(성인용보행기)
- 마. 안전손잡이
- 바. 미끄럼방지용품
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- 사. 간이변기(간이대변기, 소변기)
- 아. 지팡이
- 자. 욕창예방 방식
- 차. 자세변환용구
- 카. 요실금 팬티
- 타. 욕창예방매트리스.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복지 용구 급여 제공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의한다.
- ② 연 이용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계약이 성립 되며 연 이용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갑 또는 병이 부담한다.
- ②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,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, 수리 등 을 실시 하여야한다.
- 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/3 을 산정한다
- ⑥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 설치비, 철거비,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갑 또는 병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.

제5조(신원인수인의 의무)

- 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납부
 - 2.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 - 3.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/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 - 4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

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복지용구 이용계약내용 준수
2. 급여제공 중 ‘갑’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
3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4. 이용 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5.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6. 기타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
③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의 본인부담금 등 비용 부담
3. ①의 3 항목 준수
4. ①의 4 항목 준수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기타 ‘갑’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‘을’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)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
- 2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3)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‘갑’(또는‘병’)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만료일 전에 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만료일 전에 하여야 한다.